

# 대학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운영 내규

개정: 2022. 11. 15.

## 제1장 총칙

### 제 1조 (목적)

① 본 내규는 단국대학교 장학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원의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와 합리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둔다.

### 제 2조 (적용범위와 효력)

① 본 내규는 일반대학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석.박사과정 및 석.박사통합 과정에 적용되며,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.

## 제2장 입학관리

### 제 3조 (우수학생의 유치)

①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소속 교수들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석.박사 및 통합 학위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 학생의 모집에 적극 노력한다.

## 제3장 교육과정 및 교.강사 배정

### 제 4조 (교육과정)

①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른다.

### 제 5조 (과목개설)

①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른다.

### 제 6조 (교.강사 배정)

①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른다.

## 제4장 논문지도

### 제 7조 (지도교수의 선정)

- ①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른다.

## 제5장 자격시험

### 제 8조 (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)

- ① 등재(후보)지에 석사 2편, 박사 4편, 석박사통합과정 4편의 공저 연구논문을 종합학력시험 면제 기준으로 한다.
- ② 등재(후보)지 공저 연구논문 1편 당 종합학력시험 1과목 면제가 가능하다.

### 제 9조 (종합학력시험 출제와 채점)

- ① 시험 방법은 필기시험에 한다.
- ② 합격점수는 80점 이상이어야 한다.
- ③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종합학력시험 전 등재(후보)지에 공저 연구논문 1편 이상을 게재하여야 종합학력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
- ④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학위 취득 이전 등재(후보)지에 공저 연구논문 1편 이상을 게재하여야 한다.

### 제 10조 (외국어시험 과목)

- ① 내국인 학생에 한하여 공인어학성적 및 해외 수학(연수)으로 인한 면제 신청 시, 영어 성적만 인정한다.

## 제6장 학위과정

### 제 11조 (석사학위 과정 선택)

- ① 학위논문과 연구논문을 인정한다.

### 제 12조 (석사학위 과정의 변경)

- ① 학위취득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함. 단, 사유서 첨부 후 주임교수의 승인을 득할 경우 3학기 말까지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변경한다.

## 제7장 학위논문 심사 및 제출

### 제 13조 (연구계획서 제출 및 심사)

- ①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른다.

### 제 14조 (예비발표)

- ① 석사과정, 박사과정, 석.박사 통합과정은 학위논문 신청 직전 학기에 예비발표를 하여야 한다.
- ② 박사과정 및 석.박사 통합과정은 등재(후보)지에 공저 연구논문 1편 이상을 게재하여야 예비발표를 할 수 있다. 단, 해당 논문은 박사과정 및 석.박사 통합과정의 종합학력시험 응시 조건 논문과 별개여야 한다.

### 제 15조 (논문심사위원)

- ①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른다.

### 제 16조 (논문대체 심사절차)

- ① 학위논문 절차와 동일하다.

### 제 17조 (논문대체 제출)

- ① 연구논문을 논문대체로 할 수 있다.
- ② 연구논문은 학과로 연구논문 제본본과 국문 파일을 제출하며, 학과에서 3년 동안 보관 이후 폐기할 수 있다.
- ③ 연구논문은 중앙도서관에 제출하거나 학위논문으로 온라인 등재를 하지 않는다.

## 제8장 학과 운영위원회

### 제 18조 (의사결정 방식)

① 학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의사결정은 학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교수 1/2이상의 참석(위임 포함)과 참석 교수의 2/3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### 부칙(2018.3.7.)

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2017.3.7.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) 이 개정 학칙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재학생 모두에게 적용한다.

### 부칙(2022.11.15.)

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2023.3.1.부터 시행한다.